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9. 12. 14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99. 12. 20

다. 상정일자 :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상정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 토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보고서 채택

제6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와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 운영하려고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각각 폐지하고 동 조례로 통합함.
- 기금조성의 재원을 정함.
- 기금 운용관리 방법을 정함.
-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함.
- 재난관리기금 융자조건을 정함.
- 회계공무원을 정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는 종전의 동두천시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와 동두천시 재난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여 동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